

## 대한민국 201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 개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일부 종교인에 대한 면세 혜택도 없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교단 계열의 비정부기구(NGO)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1월 현재 여호와의 증인 신자 277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으며 65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고 56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수감자 수는 전년도의 352명에서 줄었지만, 전체 건수(680)는 2016년의 633건보다 증가했다. 또한 공판이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보고했다. 6월에,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실시 법안 도입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병역법 개정 권고안을 국방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국방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병역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가 일부에 의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국방부는 해당 연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 공청회 개최를 고려할 것이다. 국회는 연말까지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현재 종교적 차별과 관련된 1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이슬람 단체들은 이슬람교도들을 테러행위와 연관시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며 히잡을 착용한 여성들이 취업면접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현안들을 정부 관계자, NGO 대표자,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공동후원한 ‘청년 종교간 대화’를 주최했고, 이 행사에 이슬람교, 가톨릭, 불교 신자인 학생들이 참여했다.

### 섹션 I. 종교 인구 분포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체 인구를 5,120만 명(2017년 7월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대략적으로 개신교 20%, 불교 16%, 가톨릭 8%로 조사됐으며 56%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 인구조사에서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 제칠일식일예수재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는 개신교로 분류됐다. 원불교, 유교, 증산도,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를 믿는 인구는 모두 합해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 따르면, 서울에 약 300명 남짓한 소수의 유대인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중 거의 절대 다수가 주한 외국인이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는 13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0만 명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주한 외국인이다.

##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 법적 토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다양한 종교간의 협력을 지원하여 종교간 대화와 이해를 확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법률에 의해 20~30 세에 속하는 사실상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복무기간은 병과(兵科)에 따라 21~24 개월이다. 법률은 대체복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거부한 위반자는 최고 3 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8 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및 예비군 복무 의무가 면제되며 추가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비군 복무 의무는 8년 동안 계속되며 1년에 몇 차례 훈련을 받는다. 벌금은 관할구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초 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 만원(\$190) 선이다. 고발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벌금이 10 만원~30 만원(\$94~280)씩 증가한다. 법률은 위반자를 200 만원(\$1,9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경우 재량에 따라 벌금형 대신 1 일에서 3 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법률은 종교단체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등록 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인 등록신고서, 종교단체 설립취지서, 설립자의 신상 정보,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규정하는 지침과 규정, 설립총회 회의록, 임직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재산 매매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교 지도자나 종교인은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개인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12월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월을 기하여 기독교 목사, 천주교 신부, 불교 승려에 대한 일부 세금 혜택이 중단됐는데, 이전에 종교인들은 소득세 면제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이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처럼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종교단체들과의 관계를 관리한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보존법에 따라 불교 사찰 등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정부 교부금이 지급된다.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 정부 관행

정부는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하고 수감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18개월 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더 이상 추가로 병역의 의무는 지지 않지만 여전히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직 진출이나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는 등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 교단 계열 비정부기구(NGO)인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1월 현재 여호와의 증인 신자 277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으며 654명은 공판이 진행 중이고 56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수감자 수는 전년도 352명에서 감소했지만, 전체 건수(680)는 2016년의 633건보다 증가했다.

10월 현재,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950년 이후 19,248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기를 마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공판이 진행 중인 병역거부자 수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하면서, 이 같은 증가세의 원인은 현행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2004년과 201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병역법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법원의 무죄판결 건수는 증가했지만, 상당 수가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9월 현재, 하급법원은 35건의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해 2016년과 2015년의 무죄판결 건수는 각각 7건과 6건이었다.

6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실시 법안 도입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병역법 개정 권고안을 국방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국방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병역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가 일부에 의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국방부는 연말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 공청회 개최를 고려할 것이다. 국회는 연말까지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8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8.1%가 개정된 종교인 과세법안이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종교단체들은 과세기준이 실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지정하여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추정소득금액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종교활동에 대한 과세와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에 대한 과세를 구별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군복무중인 어느 이슬람교 신자가 불교도, 가톨릭교도, 기독교도 등을 위해서는 예배 장소를 제공하면서 이슬람교 신자를 위한 예배당은 제공하지 않는 데 대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다.

워싱턴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원불교 교무들이 성주군에서 원불교 성지 근처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철야기도회를 개최했다. 동 기사는 당국이 사드 배치 예정지를 봉쇄하고 경비를 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원불교 교무들은 이 때문에 성지로 가는 도로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동 기사에서 원익선 교무는 이 연좌기도가 “정부의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타 원불교도를 비롯한 기타 소식통에 따르면,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원불교도들 본인과 그 밖의 시위자들이며, 이는 정부가 사드 배치 추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데 대한 항의가 그 목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원불교도들의 우려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도 여전히 사드 배치 예정지로 가는 진입로를 막고 있는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현재 종교적 차별과 관련된 1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슬람 단체들은 무슬림을 테러행위와 연관시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며 히잡을 착용한 여성들이 취업면접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다.

유력한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 상호 이해,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의 주관 아래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종교의 자유, 화해, 종교간 공존을 증진하기 위해 세미나, 전시회, 예술문화 공연, 종교간 교류 등 여러 종교행사에 다수의 종교지도자들을 초대했다. 이슬람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소속 7대 종교단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슬람 종교지도자 및 학자 11명 가량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연례 세미나에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이에 총 62억 원(58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그 중 25억 원(240만 달러)은 불교 행사, 7억 5,700만원(71만 달러)은 개신교 행사, 5억 원(469,000달러)은 원불교 행사, 11억 원(1백만 달러)은 천도교 행사, 13억 원(120만 달러)은 유교 문화행사에 배정됐다.

####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 및 관여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회의원 등 정부 당국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 규정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종교의 자유와 관용에 관해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다양한 종교 단체와 개신교, 가톨릭, 불교, 유교,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천도교, 토착 종교를 대표하는 협회 등 NGO의 관계자들을 만나 종교적 관용의 현황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에 관한 우려사항을 논의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공동후원한 ‘청년 종교간 대화’를 주최했고, 이 행사에서 이슬람교, 천주교,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생들은 종교에 대한 편견, 공통의 가치관, 종교적 차별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